





「지능형 헬스케어제품 기반 실증·사업화 지원사업」 기업(실증)지원 추가 공고

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사업 「지능형 헬스케어 제품기반 실증·사업화지원」사업의 기업지원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능형 헬스케어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.05.26.

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장

1

지원 개요

□ **사 업 명** : 지능형 헬스케어제품 기반 실증·사업화 지원사업

□ 지원목적 : 전국 소재의 지능형 헬스케어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및 기술지원,

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기술·제품·서비스의 경쟁력 제고

□ 지원기간 : 협약체결로부터 최대 2025. 11. 30.(일)까지 ※ 지원사업별 상이

□ 지원규모 : 3개 분야 12개 프로그램 (38건, 320백만원)

□ 지원대상 : 지능형 헬스케어산업 분야 제조 및 연구개발 중소기업

□ **지원분야** : 지능형 돌봄케어, 치료기기, 건강관리·예방케어, 리빙케어

<지능형 헬스케어산업 제품 분류 예시>

구 분	유망품목
개인건강기기	혈당 측정계, 혈압 측정계, 심전도 측정계, 체성분/체지방 측정계 등
웰니스 기기	게이트웨이, 웰니스 기기, 웨어러블 단말기 등
건강 정보 앱	웰니스 앱, 의학적 정보 제공 앱 등
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앱	개인건강기록(PHR) 앱, 병원기록 관리 전용 앱, 피트니스 또는 운동 관리 앱 등
건강관리 서비스	개인건강 관리 서비스, 건강검진 사후 관리 서비스, 의료용 기능성 게임 서비스 등
원격의료 서비스	원격상담 서비스,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, 원격진료 시스템/솔루션 등
의료정보 플랫폼/솔루션	의료정보 플랫폼 등
개인 건강정보 관리 플랫폼	개인 건강정보 관리 플랫폼 등
기타	통신서비스, 의료서비스, 의료기기 등





지원내용

□ 지원규모 : 1개 분야 1개 프로그램 (1건, 50백만원)

구분	프로그램명		지원내용	건수	지원규모	수행기관
		지원목적				
		임상시험기	계획서 식약처 승인을 위한 전단계 과정을			
실증	임상시험계획	CRO기관	과 매칭하여 컨설팅 지원	0	건당	부산테크
지원	식약처승인지원	지원내용			50백만원	노파크
		제품 맞춤	제품 맞춤형 임상시험 계획서(프로토콜)작성			
		※ 지원기	간 내 임상시험계획 식약처 승인 필수			

□ 지원방법

※ 세부 프로그램별 상이함

- 지원금의 10% 이상을 기업부담금으로 편성하며, 수혜기업에서 부가세 별도 집행
- 간접지원(수행기관→공급기업) 또는 직접지원(수행기관→수혜기업)
- 수혜기업은 본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교육 및 세미나, 워크숍 등 1회 이상 필수 참석

□ 지원제외 대상

- ① 기업의 신청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(기업 대표자 등)가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가.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나.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
- ③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의 경영상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단, '라'목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)
- 가. 국세, 지방세, 기술료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- 나. 접수마감일 기준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(기업), 기업의 부도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 행자, 법정관리/화의기업 (단,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)
- 다. 법정관리·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(개인 회생·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, 면책권자 포함)
- 라.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
- 마.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기업
- 바.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,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, 부적정"인 경우
- ④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유사·중복이 확인될 경우
- ⑤ 서류가 누락(미비)되었거나 허위 기재가 발견된 경우
- 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이나 대표자
- ⑦ 기타 지원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





Ⅲ 신청방법

□ 접수기간 : 2025. 5. 26.(월) ~ 2025. 6. 13.(금) 18:00까지

□ 접수방법 : 바이오사업관리시스템(BSMS, https://www.bsms.or.kr) * 회원가입 후 직접 제출

□ 제출서류

구 분	제출서류	비고		
	수혜기업 지원 신청서(신청 프로그램별 작성)	서식1		
	(병원연계 임상지원 지원 시)임상시험 세부 계획서	서식2		
	(시민주도형/기술실증형 실증 지원 시) 리빙랩 수행 계획서	서식3		
	(공동연구개발과제 발굴 지원 시) 사업제안서	서식4		
	(비즈니스모델 설계/IR 고도화 및 전략 수립 지원 시) 세부 계획서	서식5		
	(비즈니스모델 설계/IR 고도화 및 전략 수립 지원 시) 성실이행동의서	서식6		
	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	서식7		
ᆔᄉ	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	서식8		
필수	사업자등록증 사본			
	최근 3년(2022년~2024년) 재무제표(국세청 발행분)			
	※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	_		
	(비즈니스모델 설계/IR 고도화 및 전략 수립 지원 시) 회사소개 자료 및 IR 발표자료			
	(비즈니스모델 설계/IR 고도화 및 전략 수립 지원 시) 4대보험 가입자 증명서			
	지원 제품(서비스)에 대한 상품기술서(카달로그 등)			
	최근 3년간(2022년~2024년) 수출 실적 증명서(한국무역협회 발행분)	해당 시		
	(지원 품목 의료기기 해당 시) KGMP 인증서			
	보건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기업 증빙자료	가점부여		
선택	각종 인증, 지식재산권 증서, 표창 등 사본	_		
	기타 기업 및 제품(서비스)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	_		

※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할 수 있음

□ 문의처: (재)부산테크노파크(051-320-3557, ljh@btp.or.kr, imyera@btp.or.kr)

Ⅲ 지원절차 및 일정



선정 방법

- □ (선정방법)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
- 신청기업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(지원타당성 검토)
- 대면 또는 줌-평가(필요 시 서면 평가로 대체가능) 진행
- 평가위원회는 분야를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 3명 이상 구성
- 적격심사(서류 요건검토) 후 대면평가시 일정 개별 안내
- □ (선정기준)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지원과제 및 지원금 확정
 - 제안사업의 필요성,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에 세부사업별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객관 적인 평가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조정·확정
 -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 점수 60점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상위 순서로 선정
 - 평가항목
 - 기술지원/실증지원

	평가 항목	배점
신청기업 역량 (30)	∘ 상시 종업원 수, 매출액, 수출액(해당되는 경우), 영업이익,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의 지속가능성	15
	• 사업화 의지, 인프라 및 제품현황 등 기업역량	15
 지원 필요성 (30)	• 사업의 내용과 범위의 명확성	15
	· 발생 성과와 목표치의 적정성	15
지원 적정성 (30)	• 주요 사업의 내용과 범위의 구체성, 과업기간의 적정성	10
	• 예산계획 사용용도의 명확성과 적정성	10
(50)	• 참여인력 투입현황의 적정성	10
기대효과(10)	• 지원기업의 고용 및 매출증대 기여정도	10
우대가점 (5)	• 부산지역 내 기업(본사/지사, 연구소, 공장 등의 사업자등록증,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, 연구전담부서 인증서, 공장등록증의 소재지 기준)	5

V

기타(성과활용 동의)

□ 유의사항

- 평가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, 결과는 지원기업에 개별 통보함
- 본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, 관련 행사 참여 및 향후 사업성과 분석관리를 위한 정기 모니터링 및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
- □ 매출, 수출, 고용창출 등 성과활용 동의
 - 기업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 지원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직·간접적으로 창출된 성과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 필요
 - 본 사업에서 추진하는 교육, 네트워크 활동(세미나 등) 적극적인 협조 필요







